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4. . .

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를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명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으로 한다.
- 제1조 중 “구미시의 출자·출연기관”을 “구미시”로 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하 공공기관”이란 영 제7조제2호 및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구미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의 제목 “(시장의 지도·감독)”을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자·출연기관”을 “구미시 및 각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자·출연기관”을 “각 기관”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출연기관”을 “각 기관”으로 한다.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를 수정한다.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의 출자·출연기관”을 “구미시”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하 공공기관”이란 영 제7조제2호 및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구미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의 제목 “(시장의 지도·감독)”을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자·출연기관”을 “구미시 및 각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자·출연기관”을 “각 기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출연기관”을 “각 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u>구미시의 출자·출연기관</u>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u></p> <p>제1조(목적) ----- ----- ----- --- <u>구미시</u> ----- ----- -----.</p> <p>제2조(정의) ----- -----.</p> <p>1. “<u>산하 공공기관</u>”이란 영 제7조제2호 및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지방공기업법</u>」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u>구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구미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u></p> <p>2. · 3. (원안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란 구미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다만,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리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대신한다.

1. ~ 12. (생략)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 구미시 및 각 기관-----.

② ---- 각 기관-----.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각 기관-----.

1. ~ 12. (원안과 같음)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하 공공기관”이란 영 제7조제2호 및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구미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

2.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

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및 각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다만,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리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대신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미시 및 국가정

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